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

강서구 고시 제2016 - 64호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그 밖에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낙시어선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 8. 24.

부 산 광 역 시 강 서 구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8호의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과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낙시어선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역에서 낙시어선업을 하는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과 “그 어선의 승객” (이하 “낙시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 ① 선외기를 설치한 낙시어선과 야간항해장비(레이더 등) 미설치 낙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로 한다.
- ② 야간항해장비(레이더 등)가 설치된 선내기 낙시어선의 영업시간은 03:00 ~ 22:00 까지로 한다. 단, 어선검사증서상 항해가능 시간에 대한 제한(금지)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③ 제2항 단서의 야간항해장비(레이더 등)가 설치된 선내기 낙시어선은 야간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21호에서 정한 어로·항해 금지 해역에서의 어로·항해 금지시간 (22:00~03:00) 준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지시간 중 금지해역으로의 입항을 원할 경우, 어업정보통신국과 관할 군부대 지휘통제실 및 출입항 신고소에 사전 유선신고 이행 (단, 사전

유선신고 미이행으로 군부대 해안경계 작전간 오인관측/사격발생시 모든 인명, 장비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하여는 낚시어선업자가 책임을 진다.)

- ④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항예정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항 지연은 영업시간 초과로 보지 아니한다.
1.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로 인한 안전항으로 대피
 2. 낚시객의 응급구호를 위한 입항지 변경
 3. 낚시어선의 기관 또는 항해장비 등의 고장으로 인한 긴급 구난 조치
 4.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입항지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 ⑤ 타 법령에 의한 통제 및 제한 구역 및 관할부처에 의한 허가를 받은 구역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범위내에서는 해당 부처에서 허용한 영업시간에 따른다.
(단, 관할부처의 영업시간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따른다.)

제4조(영업구역의 제한)

-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수역에 낚시객을 안내하거나 선상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3톤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이상 수역, 3톤이상 ~ 10톤미만 낚시어선은 해안선으로부터 5마일이상 수역 {단, 선외기를 설치한 3톤 미만의 낚시어선은 가덕도 동두말(위도 34° 59' 18" N) 이남 수역}
 2. [별표2]에서 지정한 무인도서 등 제한구역
 3. 강서구 소재 간출암 및 인공적으로 조성된 시설(테트라포트 등)
 4.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정한 부산항 묘박지 내의 수역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통제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해사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등 기타관계법령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 (단, 관할부처에 사전 승인 및 허가 받은 경우에는 허용)
 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용가능무인도서를 제외한 무인도서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에 의한 운항금지구역
 8. 타선박의 안전운항에 장애가 되는 해역 및 영업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9. 주인이 영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지 도서

제5조(낚시객의 야영 등)

- ① 낚시객이 야영을 할 수 있는 도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로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 ② 낚시어선업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하지 아니한 낚시객에 대하여 출항 당일 영업시간 내 출입항신고서의 입항예정지에 귀향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귀향 조치에 불응하는 낚시객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출입항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객이 야영을 하고자 할 경우, 야영장소·낚시객 인적 사항·긴급상황을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에 관한 사항 및 낚시객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해상 대기 위치 등을 출입항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낚시객의 야영을 보고한 낚시어선업자는 일몰 30분 전 부터 낚시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을 야영지와 가장 가까운 가지거리 내의 안전한 해상위치에 대기토록 하여야 한다.
 2. 대기중인 낚시어선의 낚시객에게 선상낚시를 하게 하거나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낚시어선에 허가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낚시객의 구호활동을 위하여 입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출입항신고기관에 보고·조치하고 입항 후 출입항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낚시어선업자는 야영을 하였던 낚시객이 입항지에 귀향한 때에는 즉시 그 상황을 출입항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낚시객 야영의 경우 관계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수질오염 방지 등)

-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출항에 앞서 낚시객 1인마다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봉투 또는 용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낚시객이 입항한 때 이를 회수하여 분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낚시객은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이하 “낚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쓰레기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지급하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입항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③ 낚시객은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미끼 및 밑밥을 사용하여야 하며, 낚시도구나 미끼를 무단으로 투기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낚시장소 인근의 어업인 등이 과도한 밑밥 사용에 대한 감량 또는 제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낚시객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산자원 보호 등)

-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필요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규정된 포획·채취 금지기

간 또는 금지체장을 낚시객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금지기간 또는 금지 체장에 해당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방류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② 낚시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기간 또는 금지체장에 해당되는 수산 동식물을 즉시 방류하지 아니하고 이를 용기 등에 담아 보관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수산 자원관리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기타 낚시객 준수사항)

- ① 낚시객은 낚시어선에 게시된 승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낚시객은 선상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낚시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으로 하여금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을 위반하여 운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낚시객은 승선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낚시객은 낚시장소 주변에 쓰레기를 버려서 아니되며, 섬 등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⑥ 낚시객은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준수사항)

-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낚시어선 선내 낚시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에 앞서 본 고시내용과 다음 사항을 낚시객에게 알려야 한다.
 - 1. 낚시객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 2. 낚시객은 갯바위등 낚시장소에서 낚시 도중 기상악화 등으로 낚시어선업자가 안전 대피를 위하여 승선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서, 군부대, 소방서에 인명 대피 요청 신고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에게 본 고시 내용을 교육하여야 하며, 선원의 고시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낚시어선업자가 책임을 진다.
- ⑤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른 구·군 관할 수역에 낚시객을 안내하는 경우 해당 낚시 장소(수역·육역)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명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안전한 속력의 결정은 해사안전법 제64조제2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⑦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 명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⑧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⑨ 민간대행신고소에 출입항 신고하는 낚시어선의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 전까지 경찰관 상주 출입항신고기관(관할 해양경비안전센터 또는 출장소)에 유무선 통신(팩스, 전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승선자명부와 출항사실을 전송 하여야한다.(단, 대행신고소장이 대신 명부 등 출항사실을 전송한 경우 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⑩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된다. 단, 출입항신고기관에 통신기기 중단 사유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⑪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타인이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구역에서는 해당 어업권자의 어업행위에 방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승선정원 등의 게시방법)

- ①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은 [별표1]과 같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고시의 폐지) 강서구 고시 제2012 - 118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1]

낙시어선 신고확인증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 검은색

2) 바탕 :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흰색

승객 준수사항 - 노란색

3)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게시방법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장소

해당 낙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3. 게시문

해당 낙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낙시어선업 신고 확인증(부착)

승객 준수사항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1.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금지체장(체중) 이하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합니다.
3. 승객은 승선할 낙시어선이 낙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낙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낙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일반승객과 함께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 영업시간외 항행, 영업구역 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입하는 행위
 - 낙시도구나 미끼를 낙시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낙시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5. 승객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피를 위하여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합니다.
6. 승객은 승선자명부 작성시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합니다.

[별표2]

무인도서등 낚시제한(금지)구역 현황

연번	구군	도서명	소재지	면적(㎡)	비고
1	강서구	중죽도	강서구 천성동 산267외 5필지	83,20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2	강서구	견마도	강서구 성북동 1474외 58필지	1,468,312	
3	강서구	모서도	강서구 성북동 산341	522	
4	강서구	죽도	강서구 동선동 산38외 1필지	9,460	
5	강서구	입도	강서구 성북동 산192	38,777	
6	강서구	호남도	강서구 성북동 산191	39,669	
7	강서구	토도	강서구 성북동 산190	24,496	
8	강서구	망산도	강서구 송정동 산188	1,289	
9	강서구	유주암	강서구 송정동 산189	198	
10	강서구	대마등도	강서구 명지동 산1외 9필지	386,60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11	강서구	신자도	강서구 명지동 3225	611,20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12	강서구	장자도	강서구 명지동 2985	463,19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13	강서구	진우도	강서구 신호동 179-1외 127필지	982,04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